

s018999546711s JAMES & KAREN Q. HINDS 22 BOULDER ST 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23	
과세 연도	2005	
통지 일자	2009 년 3 월 2 일	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 999-99-9999		
연락처	전화번호 1-800-829-	
	0922	
귀하의 발신자 ID	1234	
페이지 1 / 4	'	
바코드		

강제징수 통지서 귀하의 분할납부 합의 해지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: \$3,999.86

귀하의 분할납부합의에 따른 월 납부액이 납기를 경과하였습니다. 귀하가 약속한 분할납부 합의 내용에 따라, 정해진 납부액이 1회 이상 미납된 상태이므로 귀하의 분할납부 합의가 2009 년 4월 1일부로 해지됩니다.

또한 IRS 는 2009 년 3 월 12 일 이후에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을 일체의 세액을 압류("강제징수")하여 귀하의 미납 세액인 \$3,999.86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 청구내용 요약

납부할 세액 \$2,902.68 미납 과태료 284.26 이자 부과액 812.92 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 \$3,999.86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주치

즉시 납부

• 납기가 경과한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내국세법 제 6159항 (b)호에 의거하여 귀하의 분할납부 합의를 해지하며, 귀하는 미납금 전액을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.

뒷 면에 계속.



납부

John Smith 123 N Harris St Harvard, TX 12345 통지 번호CP523통지 일자2009 년 3 월
2 일사회복지 보장 번호999-99-9999

- 수표나 환의 수취인은 United States Treasury로 지정하십시오.
- 지급 수단과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(XXX-XX-XXXX), 과세 연도 (2005) 및 양식 번호 (1040)를 기입하십시오.

즉시 납부해야 할 금액

\$3,999.86

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, TX 73301-0030 s018999546711s

통지 번호	CP523	
과세 연도	2005	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	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 999-99-9999		
페이지 2 / 4		

귀하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 -계속

즉시 납부 -계속

•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입할 수 없을 경우 1-800-829-0922번으로 전화하여 분할납부 합의 사항을 원상복구하거나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십시오. 국세청이 그 방법에 동의하면, 귀하는 추가 수수료 \$45을 납부해야 합니다.

귀하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

귀하가 이미 미납 잔액을 완납하였거나 납부액이 귀하의 계좌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1-800-829-0922번으로 전화하시고, 귀하의 납부 정보를 준비하여 담당자와 검토하도록 하십시오. 저희에게 우편으로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. '연락처 정보' 부분에 내용을 기입하고 잘라내어 이 잘라낸 부분을 서신이나 납입증빙자료를 포함하는 문서와 함께 저희에게 송부하여 주십시오.

이의신청 청구권

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, 귀하는 징수 이의신청 프로그램(Collection Appeals Program)에 따라 이의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2009 년 5 월 1 일까지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징수 이의신청 요구서 (Collection Appeal Request - Form 9423)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. 사이트 www.irs.gov 에서 Form 9423 을 다운로드하거나 1-800-TAX-FORM (1-800-829-3676)번으로 전화하여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.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

- 미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, 국세청은 2009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귀하가 주에서 환급 받을 세액을 압류("강제징수")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내국세법 제 6331항 (d)호의 규정에 따른 강제징수 통지서입니다.
- 주 환급 세액을 압류("강제징수")한 후에도 여전히 미납 잔액이 있을 경우, 귀하에게 IRS 청원 심사실에서 청문할 권리를 부여하는 통지서를 귀하에게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후에 귀하의 다른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한 압류("강제징수") 또는 차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. 해당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:
 - 임금, 부동산 수수료, 기타 소득
 - 은행계좌
 - 사업 자산
 - 개인 자산 (차량 및 주택 포함)
 - 사회복지 보장 수급액



연락처 정보

James Hinds 22 Boulder Street Hanson, CT 00000-7253

통지 번호	CP523
통지 일자	2009년 3월
사회복지 보장 번호	2일 999-99-9999

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거나 www.irs.gov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.

□귀하가 서신을 동봉하는 경우 여기를 체크하십시오. 모든 서신에는 사회복지 보장 번호 (XXX-XXX-XXXX), 과세 연도 (2005) 및 양식 번호 (1040)를 기입하십시오.

	□ 오전 □ 오후			□ 오전 □ 오후
기본 전화번호	통화 가능 시간	추가 전화번호	통화 가능 시간	

통지 번호	CP523	
과세 연도	2005	
통지 일자	2009년 3월 2일	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 999-99-9999		
페이지 3 / 4		

귀하가 연락하지 않을 경우--계속

-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납부 요청을 하지 않으면, 국세청은 언제든지 귀하의 재산에 연방세 유치권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유치권이 설정되면 귀하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세금 유치권은 귀하의 신용 보고서에도 표시되므로— 귀하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—, IRS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우선 압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귀하의 채권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통지됩니다.
- 귀하가 세무부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("강제징수")권을 갖습니다.

과태료

미납 과태료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금액

미납 과태료 합계

항목

\$284.26

납기 후에 세금을 납부하면 미납 세금에 대하여 월 0.5% (분할납부에 합의한 경우 0.25%로 감액)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과태료 최대 금액은 미납금액의 25%입니다.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본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는 매월 과태료가 미납액의 1.0%로 인상됩니다. 1개월이다 차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. (내국세법 제 6651항)과태료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과태료의 면제 또는 축소

국세청은— 경제적 어려움, 가족의 사망, 자연재해로 인한 재무 기록의 손실 등의— 상황으로 인하여 적시에 납세자 의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.

국세청이 귀하의 과태료 부과액을 면제 또는 삭감해주도록고려해 주기를 바라시면 아래 조치를 취하십시오:

- 재고할 과태료 부과액의 종류를 명시 하십시오(예: 2005 년도 지연 신고 과태료).
- 각 과태료 부과액에 대하여 재고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십시오.
- 귀하의 진술서에 서명하고 저희에게 우송하십시오.

저희가 귀하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후, 귀하의 설명 내용이 과태료를 삭감 또는 면제할 합리적 이유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
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

IRS 의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귀하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, 다음 기준에 해당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:

- 귀하가 특정 사안에 대하여 IRS 에 서면 조언을 요청했는지 여부
- 귀하가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IRS 에 제공하였음
- 귀하가 IRS 로부터 서면 조언을 받았음
- 귀하가 서면 조언을 따랐는데 그 조언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음

IRS 의 잘못된 서면 조언 때문에 발생한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하려면 '환급 청구 및 경감 요구서' (Form 843)를 작성하여 귀하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IRS 서비스 센터로 제출하십시오. 이 양식을 원하거나 귀하의 해당 IRS 서비스 센터를 찾으려면 www.irs.gov 를 이용하거나 1-800-829-0922 번으로 전화하십시오.

통지번호	CP523
과세 연도	2005
통지 일자	2009년 3월
	2 일
사회복지 보장 번호 (SSN)	999-99-9999
페이지 4 / 4	•

이자 부과액

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부터 세액 완납일까지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이자는 해당되는 과태료를 포함하여 미납금액이 있는 한 부과됩니다. (내국세법 제 6601 항)

항목 금액

총 이자 \$812.92

아래 표는 귀하의 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계산에 사용된 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자 계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 1-800-829-0922번으로 문의하십시오.

기간	이자율
2005.10.1 ~ 2006.6.30	7%
2006.7.1 ~ 2007.12.31	8%
20081.1 ~ 2008.3.31	7%
2008.4.1 ~ 2008.6.30	6%
2008. 7. 1 ~ 2008. 9.30	5%
2008. 10. 1 ~ 2008. 12.31	6%
2009. 1. 1 일 이후	5%

추가 정보

- 참고 사이트: www.irs.gov/cp523.
- 세무 양식, 지침 및 간행물이 필요할 경우 www.irs.gov를 방문하거나 1-800-TAX-FORM(1-800-829-3676)으로 전화하십시오.
- 동봉한 IRS 징세 절차 (간행물 594)를 검토하십시오.
- 일반적으로 저희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직접 상대합니다. 하지만 때로는 납세자 계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종업원, 고용주, 은행 또는 이웃 사람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 계좌와 관련하여 저희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본 통지서는 귀하의 기록 서류로 보관하십시오.

국세청은 본 통지서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 각 통지서에는 귀하의 공동 계좌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주의사항: 미납액은 한 번만 납부하십시오.

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.